

의안번호	제 626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6월 일 (제356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최병윤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5월 31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6
----------	-----

발의연월일 : 2017년 5월 31일

발의자 : 최병윤, 김학철, 연철흙,
박봉순, 박한범, 이언구,
이광진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자녀돌봄휴가 대상 학교가 확대됨으로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충돌되는 조항 및 중복되는 일부 조항 삭제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특별휴가) ⑥항 삭제

⑥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 내용

-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등학교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 신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

※ 개정 전·후 자녀돌봄휴가 비교

- 당초 : 유치원, 초등학교 행사시 3일 이내
- 변경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행사시 2일 이내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특별휴가) ③항 중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삭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⑦항과 중복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관계없음.
- 라. 입법예고 : 관계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특별휴가) ① ~ ② (생략)</p> <p>③ <u>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u></p> <p>④ ~ ⑤ (생략)</p> <p>⑥ <u>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⑦ ~ ⑨ (생략)</p>	<p>제18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삭제)</p> <p>⑦ ~ ⑨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